

광주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37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3731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합30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임혜원

변론 종결 2023. 5. 17.

판결 선고 2023. 7. 1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합30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150,6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지역주택조합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는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한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제1심에서 한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제1심에서 구한 예비적 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채권 양도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5. 6. 2. C2) 과
사이에, C에 이자율을 연 9%로 정하고, C 발행주식 3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511,600뉴질랜드 달러를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 2015. 6. 5. 858,000뉴질랜드 달러, 2015. 6. 15. 390,000뉴질랜드 달러, 2015. 6. 25. 1,263,600뉴질랜드 달러를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2,511,600뉴질랜드 달러(한화로 환산하면 1,953,383,796원이다)를 지급하였다.

2) E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 원리금 합계 2,861,707,261원(= 원금 1,953,383,796원 + 이자 908,232,465원) 및 그중 원금 1,953,383,79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보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0. 27.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61807), 위 지급명령은 2020.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E는 2021.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C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3) 위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고, 다시 원고는 2021. 5. 3. E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E의 대리인으로서 C에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1. 5. 4. C에 도달하였다.

나. C의 D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6. 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가칭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C과 사이에, 2015. 6. 22. 대여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15. 6. 23. C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C에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채무액은 2018. 12. 5. 기준으로 2,004,456,985원이다.

다. C의 채권 양도

1) C과 이 사건 조합은 2018. 12. 5. 피고, I, J(이하 이들을 통틀어서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C의 채무자로서 피고 등에게 각 채권액에 상응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제34호증)를 작성하고, 2018. 12.

6.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K 등부 2018년 제4186호로 인증받았다.

2) C은 2018. 12. 6. 차용금의 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중 5억 원을 피고에게, 451,500,000원을 J에게, 2억 원을 I에게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금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9가합1031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1.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9가합1031 판결), 쌍방이 불복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위 양수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2021. 11.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645,150,68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32 내지 34, 39, 42, 62호증, 을 제5, 6, 7,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E와 C은 O의 실질적인 소유 및 지배에 따라 운영된 회사이고, O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E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8. 12. 6.경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및 사정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25, 37, 40호증, 을 제2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O는 AI Ltd(이하 AI라 한다)와 트러스트계약4) 을 체결하여 AI로 하여금 본인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② AI의 전무이자 O의 6촌 동생인 Y은 2015. 5. 14. '한국으로의 자금 10억 원 송금 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질랜드법인과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AI에서 뉴질랜드법인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뉴질랜드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위 자금을 대여 혹은 투자하는 방법을 통하여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10억 원의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O에게 보고하였다.
- ③ 뉴질랜드법인 E가 위 보고 직후인 2015. 5. 21. 설립되었고, 당시 E의 대표이사는 Q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가 C에게 약 20억 원의 거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Q가 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AI의 부장(General Manager)인 AJ이 Q(영문명 AK)에게 E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여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AK 씨, 첨부 의 이름 밑에 사인해서 다시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항상 협조 잘해주시는 거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한 점, Q는 2021. 11.경 'E가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가 이미 등기부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Q는 O의 지인으로서 O의 요청에 따른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Y은 O의 지시에 따라 2015. 5. 26. 사내이사 AL, 감사를 피고로 하는 한국법인인 C를 설립하였고, 이후 O의 6촌이자 Y의 동생인 N이 2015. 8. 3.부터 2015. 10. 11.까지, Y이 2015. 10. 29.부터 2016. 10. 12.까지, 이후 2016. 10. 12.부터 다시 N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N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E, 이 사건 조합의 의사결정주체는 모두 O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등 C의 전반적인 업무를 O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도 O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⑤ C 설립당시 위 회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피고, AB, AM, AN이 C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는 O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다음 형식적으로 주주를 인수한 것이다.

⑥ Y과 AJ은 위 ①항 기재 보고 내용에 따라 O의 자산관리계좌에서 뉴질랜드법인 E를 통하여 한국법인 C에 투입할 사업자금에 대한 E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질권설정계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였고, O에게 보고하였다. Y과 AJ은 2015. 6. 2. 서로 이메일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질권설정계약서에 E의 대표이사 Q의 서명표시, 그 이외 서명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수정할 부분 등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주고받았다. 한편 O는 이 사건 조합 사업자금 10억 원의 송금을 지시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초 약정이율 4%는 너무 낮다면서 이자율 9%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고,5) 이 지시사항에 따라 이자율이 9%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E와 C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는 E나 C의 내부의사결정 절차 없이 O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다.

⑦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 관련자료를 E에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차용금의 만기일이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2개월이고, 사업의 토지 현황 및 사업수지분석 등의 관련 자료를 C이 E에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C은 뒤 ⑪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가 아닌 O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⑧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이후 E 명의의 계좌에서 2015. 6. 5. 858,000뉴질랜드달러, 2015. 6. 15. 390,000뉴질랜드달러, 2015. 6. 25.

1,263,600뉴질랜드달러 등 총 2,511,600뉴질랜드달러가 C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6) ⑨ 위와 같이 송금이 완료된 이후 O의 처남인 P은 2015. 6. 1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조합원모집을 하기 시작하였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그 직후인 2015. 6. 22. C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⑩ 한편 O는 이 사건 사업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2015. 3. 18. 및 2015. 7. 28. 피고로부터 합계 5억 원을, J로부터 2015. 8. 17.경 4억 원, 2015. 11. 30.경 1억 원을 각 빌리고, 2015. 7. 28. I으로부터 2억 원을 각 빌리면서, C과 피고 등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가 C의 피고 및 I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투자약정서, 을 제3호증의2, 을 제5호증의2). 이처럼 O는 자신의 자금 10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인 법인인 E와 C을 각 설립한 다음 자신의 자금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C 명의로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직접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고 C의 주주 지위를 확보해 주기도 하였다.

⑪ C은 2015. 9.경부터 2017. 11.경에 이르기까지 C의 자금처리내역 등을 O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추진현황도 함께 보고하였고, O는 직접 산출한 위 아파트의 분양가 및 공사비, 추정매출이익 등을 자필로 작성한 문건을 보내기도 하였다.

⑫ 한편 C이 투자금 부족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자, N과 P은 투자자들 및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았고, 이에 O를 만나 C과 이 사건 조합의 채무처리방안에 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2018. 6.경 뉴질랜드를 방문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O는 C의 차용금 중 액수가 크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한 피고 등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지금 약 900평 정도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체비지가 남아 있으니 채권자들에게 일단 땅을 주는 것으로 설득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와 P 사이의 2020. 1. 30.자 녹취록에 의하면 P은 피고에게 '피고 등을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로 포함시켰고, 회장님(O)도 포함시키라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⑬ 한편 T의 대표 AO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인 2019. 9. 19. O 및 E와 사이에 'O가 AO에게 지급할 1억 7천만 원을 E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명령금을 수령하여 이를 AO에게 지급하고, 이를 조합 대표인 P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20. 4. 18. C와 사이에 C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중 5억 2,000만 원을 T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C은 뉴질랜드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2억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위 돈을 O의 지시에 따라 변제완료하였다는 내부분건을 작성하였으며, N은 C이 E로부터 입금받은 돈 중 4억 원 상당은 O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처럼 O는 이 사건 채권양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자와 사이에, E와 C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및 추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등(이와 같은 사정은 N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E와 C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⑭ E는 2017. 7. 13.경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사업체로 존속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뉴질랜드 관보에 게시되었고, 위 게시 절차를 거쳐 한 달 뒤인 2017. 8. 14. 뉴질랜드 회사법 제318(1)(b)절에 따라 등기부에서 삭제된바, E는 2015. 6. 이후에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E가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행위를 직접 진행하였다는 사정 외에 법인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⑮ C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다른 영업활동은 찾아볼 수 없으며(원고도, C이 2017년 이후 회계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영업실적도 전혀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외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2018. 12.무렵 세금이나 4대보험료조차도 납부할 여력이 없어 폐업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O가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E와 C을 설립한 것으로 위 두 회사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 및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고,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또한 O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N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원고는 P도 N의 말만 믿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모든 것은 O의 지시 혹은 보고 후에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C과 이 사건 조합은 그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O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1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N이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N이 피고 등을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반면, O는 피고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피고의 C에 대한 투자약정서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까지 되어있어 O 입장에서는 위 채무를 조속히 처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실제 2019. 4.경 이후에나 이루어졌음에도 2018. 12. 6.자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거나, 이 사건 조합에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된 2019. 8. 31. 이후에야 비로소 외부에 드러났으므로 O가 2018. 12. 6.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O의 자금으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O가 늦어도 위 조합에게 통지되었다는 2019. 8. 31.경에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후인 2021. 2. 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설령 O가 2018. 12. 6.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N은 2018년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N으로부터 위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아 온 O 역시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2018. 12.경 C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8. 12.경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거나, O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E와 C의 실소유자인 O는 2018. 12. 6. 무렵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으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E 역시 2018. 12. 6.경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양도인인 E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8. 12. 6.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2021. 2. 9.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7)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이 법원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양영희

판사김진환

판사황진희

별지

- 1) 아래 청구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이다.
- 2) 2015. 5. 26. 'F'이라는 상호로 설립 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6. 18. 'G'로, 2015. 12. 3. 'C'로 순차적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C이라 한다.
- 3) 다만 채권 양도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채권 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양수도 대상을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6180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으로 기재하였다.
- 4) 트러스트계약은 신탁계약의 일종으로, 재산을 보유한 위탁자가 수탁자를 활용하여 그 보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가 받도록 하는 사적인 계약을 의미한다.
- 5) 이후 수정을 거쳐 C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갑 제1호증).
- 6) 최초 E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시에는 대여금을 1,271,000뉴질랜드달러로,

이자율은 연 4%로 정하였으나(을가 제23호증), 이후 수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여금은 총 2,511,600뉴질랜드달러, 이자율은 연 9%로 변경되었다(갑 제1호증).

7)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 외에 원고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를 받은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채무자 C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